

ICC仲裁에서 仲裁人 選定과 確認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Appointment and Confirmation of the Arbitrators in ICC Arbitration

오 원 석*
Won-Suk Oh
김 용 일**
Yong-Il Kim

〈 목 차 〉

- I. 서 론
- II. 중재인 선정·확인시 고려사항
- III.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 확인
- IV. 중재법원에 의한 중재인 선정
- V. 결 론

주제어 : ICC 중재법원, 중재인 선정, 중재인 확인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I. 서론

국제상사중재에서 ICC중재는 취급건수나 명성에 있어서 다른 중재기관의 중재에 비하여 단연 우위에 있다. 예컨대 ICC중재는 중재법원(Court of Arbitration)의 중재인 선정·확인(Appointment and Confirmation of the Arbitrators), 쟁점정리사항서(Terms of Reference)의 작성, 판정문의 검토(Scrutiny) 및 중재비용의 당사자간 균등예납(Advance Deposit in Equal Parts) 등의 특징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 가운데 중재인의 선정·확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상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1인 중재의 경우에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법원이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3인 중재의 경우에 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중재법원이 이를 확인하면 선정된 중재인들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이들이 의장중재인 선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법원이 이를 선정한다. 결국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이 선정되면 중재법원은 이를 확인할 뿐이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면 중재법원이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ICC 중재규칙(ICC Rules of Arbitration) 제9조는 중재인의 선정·확인에 관한 중재법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중재의 질은 중재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때, 중재인의 선정·확인에 중재법원이 개입하므로 ICC중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논자는 본고에서 이러한 중재법원의 기능을 ICC 중재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검토하므로 그 특징과 우월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국제중재규칙 개정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고와 유사한 주제로 발표된 기존의 국내논문이 다수 있지만,¹⁾ 이들 논문은 주로 각 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인의 선정과 자격 등에 대해 비교 연구한 반면, 본 논문은 중재인 선정은 물론, ICC 중재규칙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중재인 확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김용일·하명근,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 선전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제8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최혁준,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비교연구”, 『중재연구』제1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6), 이상욱, “국제중재법규상의 중재인선정계약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중재권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제29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4), 장복희,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의 선정”, 『계간중재』제297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

II. 중재인 선정·확인시 고려사항

1. ICC 중재규칙 제9조 제1항의 내용

ICC 중재규칙 제9조 제1항은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확인함에 있어 중재법원은 예상중재인(pro prospective arbitrators)의 국적, 거주지, 다른 중재인이 소속된 국가와의 기타관계, 동 규칙에 의한 중재수행 가능여부와 중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사무총장이 제9조 제2항에 의거 중재인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1항은 중재법원이 중재인을 확인하거나 선정할 때 고려할 기준들을 열거하면서 여기에 예상중재인의 국적, 거주지 및 당사자와 중재인이 소속된 국가와의 기타관계 외에 중재인의 중재수행가능여부와 중재수행능력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비록 제1항에서는 규정하지 않으나, 중재법원은 중재인의 독립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²⁾ 특히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은 관련 당사자와는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함을 규정한 것(제5항)은 바로 중재인의 독립성 확보와 직결된다.

제1항은 중재인의 선정·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양 기능은 구분되어야 한다. 먼저 선정과 관련하여 중재법원은 매 사건마다 고려할 기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도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재인을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지명에 따른 후속적인 행위이다. 비록 중재법원은 동 규칙의 독립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제5항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인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 예상중재인이 중재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확인을 거절할 수 있다. 결국 중재법원의 선정기능을 적극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확인기능은 소극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재인 선정·확인시 고려사항

(1) 국적·거주지 및 기타관계

실제로 중재법원은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 확인시 중재인의 국적이나 거주지를 보고 확인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동중재인의 확인과는 달리 중재법원이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선정할 때는 객관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다른 중재인이 소속된 국가와의 기타 관계”(other relationships with the coun-

2) 이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제4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tries of which the parties or other arbitrator are nationals)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여기에서 “기타관계”(other relationships)란 국적 이외의 다른 관계나 인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적이 다른 국가에 오랫동안 거주한 경력 등과 같이 중재인의 중립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되는 요소를 의미한다.³⁾ 제1항에서 “거주자와 기타관계”에 관한 언급은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과거 ICC 중재규칙(1975)에 국적요건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⁴⁾ Eisemann ICC 중재법원의 전 사무총장은 동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중재법원의 판단기준에 많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

대부분의 경우 중재법원은 중재인의 거주지나 당사자와의 ‘기타관계’가 그들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적은 동 규칙 제9조 제5항에 명기된 것과 같이 중재법원의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기준이 되어왔다.

(2) 예상중재인의 중재수행 가능성

최근 중재법원은 ICC중재를 신속하게 수행할 중재인의 수행가능성(availability)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1995년 「중재인의 독립진술서」(arbitrator's statement of independence)양식에 예상중재인은 중재규칙의 모든 요건에 따라 중재인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수행가능하다」(able and available)는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중재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ICC중재의 조직과 업무진행이 전적으로 중재인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상당한 정도가 당사자의 요구와 행위에 달려 있다. 즉, 동 규칙 제15조에 명기된 것과 같이 당사자는 중재절차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갖는다.

예컨대 답변서나 심리일정표 등 중재인 선정시 알지 못했던 것을 당사자의 요구로 결정할 수 있다. 중재인으로 지명되었을 때 그들은 중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중재진행이 다른 직업적인 약정과 모순이 없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 더구나 중재인은 선정당시에 중재부탁의 범위를 막연히 알고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의 복잡성이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등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재인 선정시 중재법원은 선정된 중재인이 당사자의 기대 대로 중재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3) H. Smit, "The Law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m. Rev. Int. Arb.* 1991, pp.33-34.

4) "The arbitrator's nationality did not necessarily suffice to characterize him and thus ensure that his appointment should not be likely to be challenged by the parties or not fully acceptable to the other arbitrators"(Report of Jean Robert, Rapporteur of the ICC Commission, to the 25th Congress of the ICC, *Madrid*, June 17, 1975).

5) F. Eisemann, "Le nouveau règlement d'arbitrage de la Chamber de Commerce Internationale," *Droit et Pratique du Commerce International*, Vol.1 No.3, 1975, p.358.

그러므로 ICC중재인에게 불분명하고 예상할 수 없는 요건에 대해 무제한 약속을 기대할 수 없다.⁶⁾

아무도 중재인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받지는 않으나 일단 중재인으로 활동할 것에 동의한 사람은 중재가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⁷⁾ 즉 중재인은 자신에 대한 지명을 수락하기 전 알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중재에서 자신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사자들도 중재인을 각각 지명하기로 합의하기전 지명된 사람이 잠정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약정을 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예상중재인의 능력

동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인을 확인할 때 그들의 중재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재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이미 당사자에게 중재인의 지명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재법원은 중재과정에서 중재 수행능력이 없는 중재인을 교체할 권한을 갖고 있다.⁸⁾ 중재수행능력과 관련하여 종종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언어

중재인은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하여는 중재진행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을 지녀야 한다. 만약 중재인이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증인의 증언이나 변호사의 변론을 이해할 수 있는 통역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통역인의 고용은 정확한 의미전달에 있어서 불충분하며 중재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다.

한 사건에서, 사임한 중재인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이 쟁점 정리사항서에 명기된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상대방사자도 그 지명을 반대했기 때문에 중재법원도 그 중재인의 확인을 거절하였다. 분쟁사유가 중재언어인 경우 중재법원은 통상 모든 예상중재인에게 각각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의장중재인이나 단독중재인으로 선정된 자는 중재언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이 편견이 없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양당사자의 언어 모두를 이해하도록 요구받는다. 하지만 중재가 양당사자의 언어로 수행될 때, 통상 모든 중재인들이 양당사자의 언어에 정통하거나 중재의 준거법 국가의 언어에 익숙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중재인

6) *K/S Norjarl A/s v.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1991) 3 All E.R.211.

7) F. Eisemann, "Déontologie de l'Arbitre Commercial International," *Rev. arb.* 1969, p.222.

8) ICC Rules of Arbitration, Art. 12(2); "An arbitrator shall also be replaced on the Court's own initiative when it decides that the is prevented *de jure* or *de facto* from fulfilling this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r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s".

이나 단독중재인까지도 언어적 능력보다 다른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⁹⁾

2) 법률적 지식과 해당분야의 전문성

ICC 중재규칙은 다른 중재규칙이나 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중재인이 어떤 법률적 훈련이나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ICC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은 대부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국제상사중재에서는 중재판정문에 판정이유가 명시되며,¹⁰⁾ 중재판정의 이유에 관한 유효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법정에서 판사가 이를 판결한다. 특히 재판관할권, 준거법 및 성문법적 해석문제가 중재에서 거론된다면 중재인은 법률적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실무경험까지 필요할 수 있다.¹¹⁾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도록 하는 취지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현출시킴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판정을 납득시키고 승복하게 하여 중재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판결에서와 같이 법률가들이 원하는 사실인정, 법률효과 및 당부판단의 완벽한 논리적 과정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¹²⁾

중재법원은 선정된 중재인이 중립적 국적을 갖고, 중재에 적용될 법이나 이와 유사한 법계에 정통함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중재인들이 적절한 법률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되거나 이의를 제기당하는 경우는 실제로 드물다.

한 예로, 스위스회사인 피신청인과 인도회사인 신청인간 분쟁에서 피신청인은 중재법원이 단독중재인으로 선정한 변호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중재는 인도에서 진행되었고 중재조항에는 독일법이 준거법으로 명기되어 있었다. 선정된 중재인은 독일에서 중재를 수락하였으며, 독일어를 이해하고 독일법과 관련된 많은 소송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피신청인이 그를 기피신청한 이유는 그가 독일법 전공학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법의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그가 비록 법률공부를 위해 독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독일실정법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음은 물론, 독일거래법과 관련된 각종규칙에 대해서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

9) Y. Derains & E.A. Schwartz, *A Guide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159.

10) 우리 중재법(제32조 제2항)에서도 중재판정문에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Bon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12. No.1, 1991, p.1, pp.8-9.

12) 대법원판결 2001. 4. 10. 99다13577에서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하여 위 같은 사실을 인용한 후, 계속하여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기피신청대상자인 그 중재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¹³⁾

“본인이 독일법 학위가 없고 독일법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은 사실이지만, 독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많은 사건을 취급한 경험이 있다. 또 본인은 상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독일의 법률적 의제를 토론하고 비교·검토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으며 의장도 맡았다. 그러므로 본인은 대륙법계의 훈련된 변호사처럼 당사자의 증빙이나 주장을 기초로 공정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피신청인이 독일법 뿐만 아니라 독일인 자격을 갖고 있는 중재인을 선정하기를 원했다면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그렇게 약정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피신청인은 중재인 선정을 ICC에 위임하고 있었다”.

결국 인도회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중재인 기피신청에 반대했고 이러한 기피신청이 중재법원에 의하여 거절되었다.

한편 당사자들은 중재인이 해당분쟁분야 즉, 해사, 건설 또는 지적재산권 등에 익숙할 것을 기대한다.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모든 예상중재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작성하는 표준이력서 양식에 전공분야를 기재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재법원이 그러한 상업적·기술적 전문성이 결여된 중재인을 기피하여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며, 중재규칙도 중재인이 상당한 범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두 명의 중재인이 전문가이고 변호사가 그 중재사건의 의장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두 명의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에 기술적인 전문성(technical expertise)을 제공하며, 의장중재인은 중재절차가 정확히 이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관련 중재인 선정에 대해, 예컨대 그의 명성, 솔직함, 판단력, 국적, 전문적 경험, 유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¹⁵⁾

3) 중재의 전문성 등

국제중재를 맡을 중재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관련 중재법과 관습에 대한 경험이다. 특히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의 경우 이러한 요건은 더욱 중요하다. 중재경험에는 관리능력과 국제적 마인드(international mindedness)를 갖춘 국제중재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¹⁶⁾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중재인의 접근방식이 지나치게 편협하거나 맹목적인 경우에 국제중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재법원은 통상 중재인 선정시 그가 국제중재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13) Y. Derains & E.A. Schwartz, op. cit., pp.160-161.

14) ICC Rules of Arbitration, Art. 20(4); “ The Arbitral Tribunal, after having consulted the parties, may appoint one or more experts,.....”.

15) H.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2, p.401.

16) Lalive, “On the Neutrality of the Arbitrator and the Place of Arbitration,” *Swiss Essay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Schulthess 1984), p.23, p.28.

그렇지만 중재법원은 이를 엄격하고 절대적인 요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동 법원은 중재에 대한 사전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의 확인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고, 그 가운데 2인의 중재인이 모두 국제중재나 ICC 중재경험이 없다면, 중재법원은 이러한 경험을 갖춘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중재인의 연령이나 건강 등 신체적 요건 뿐 만아니라, 이메일의 활용과 같은 통신수단의 습득능력도 중재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메일 활용의 경우에 중재법원은 아직 이에 관한 어떤 요건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중재인의 연령에 있어서는 일부 ICC 국내위원회에서 적법한 요건이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ICC중재의 경우 중재법원은 이에 관하여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Ⅲ.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 확인

1. ICC 중재규칙 제9조 제2항의 내용

ICC 중재규칙 제9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무총장은 관련 당사자의 特定合意(particular agreements)에 의해 관련당사자가 지명한 공동중재인, 단독중재인, 의장중재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위의 중재인이 완전독립확인서(statement of independence without qualification)를 제출하거나 제한적 독립확인에 대하여 반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확인은 다음 회기에 중재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만약 사무총장이 공동중재인, 단독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간주할 경우 동 사안은 중재법원에 회부되어야 한다”.

1998년 이전에는 중재법원만이 중재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의 조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ICC 중재규칙에서는 사무총장에게 제한적이지만 ‘확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 조항은 특히 중재판정부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되었다.

원래 중재법원만이 중재인을 확인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재법원의 어느 한 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¹⁷⁾ 확인을 위해 관련 위원회는 개최 1주일 전에 의사일정과 관련 서류작업을 완료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사무총장이 모든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공동중재인의 확인작업이 지연되면 자동적으로

17) ICC Rules of Arbitration, Art. 1(4); “As provided for in its Internal Rules, the Court may delegate to one or more committees composed of its members the power to take certain decisions, provided that any such decision is reported to the Court at its next session”.

의장중재인의 선정이나 확인작업이 지연될 것이다. 그러나 동 규칙의 도입으로 중재인 선정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사무총장은 더 이상 위원회의 개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중재인 확인여부를 결정할 모든 정보를 받는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만약 사무총장의 부재시에는 중재법원의 내부규칙(Court's Internal Rules, Art. 5)에 따라 확인권한이 사무차장이나 중재국장(General Counsel)에게 위임 될 수 있다.

2. 사무총장의 확인권한과 한계

1998년 중재규칙 개정과정에서 ICC위원회는 당사자간 '확인'에 관한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확인권한을 갖는 것에 반대했었다. 그 결과 당사자간 이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 확인을 위해 중재법원의 회의개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합의되었다.

동 규칙 제9조 제2항은 예상중재인의 선정이 중재인의 독립성 문제와 관계없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관하여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 예컨대 지명된 중재인이 비록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 중재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중재인의 확인에 대하여는 상대 당사자가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가 예상되는 중재인의 경우 사무총장은 확인하지 않고 중재법원에 확인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의 경우에 총95명의 중재인이 선정·확인된 가운데 이들 중 약 50%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선정된 중재인에 대하여 당사자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확인을 원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한 당사자가 ICC중재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서의 중재조항이 ICC중재규칙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ICC중재가 받아들여질지 분명하지않는 경우이며, 둘째는 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 사무총장은 복수의 피신청인이 합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하길 동의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제의한 중재인의 확인을 원하지 않는다.

3. 확인절차

사무총장은 중재인을 확인하기 전에 그에게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와 이력서제출을 요구한다. 이들 서류는 사무국에서 직접 예비중재인에게 발송하여 지명시에 그 양식을 완성하도록 요구한다. 그 후 사무국은 완성된 서식의 복사본을 양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특히 이력서에는 중재인 자격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가 상대 당사자의 반대를 유발할 경우에 사무국은 이 문제를 중재법원의 다른 위원회에 맡길 것을 결정한다.

4. 불확인의 결과

중재법원은 중재인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에 지명확인이 있는 당사자에게 다시 추천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기간은 보통 15일에서 30일을 허용한다. 중재법원이 중재인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중재인의 독립성의 결여로, 이것은 훗날 불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일방당사자에게 새로운 지명권리를 박탈한다면 이는 너무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중재법원의 지명에 하자가 예상된다면 오히려 일방당사자에게 다시 중재인을 지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시간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만약 일방당사자가 반복하여 독립적이지 않은 중재인을 지명한다면 중재법원은 당사자에게 추가 지명을 의뢰하지 않고 중재법원이 직접 지명할 수 있다.¹⁸⁾

IV. 중재법원에 의한 중재인 선정

1. ICC 중재규칙 제9조 제3항·제4항·제5항의 내용

ICC 중재규칙 제9조 제3항·제4항·제5항은 중재판정부의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중재법원이 선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중재법원으로 하여금 ICC국내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국내위원회의 적절성 여부의 판단을 중재법원에 맡기고 있다.

제9조 제3항은 “중재법원이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중재법원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ICC국내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이 그 추천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의 국내위원회가 중재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추천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원은 위의 국내위원회에 반복하여 추천을 의뢰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9조 제4항은 “중재법원은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위원회가 없는 국가로부터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의 의장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당사자도 중재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반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9조 제5항은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은 관련 당사자와는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상황에서 어느 당사자도 중재법원에 의하여

18)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LCIA)의 경우에 처음 지명된 자가 중재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거절된다면 중재법원은 처음의 지명절차를 따르지 않을 권한이 있다(LCIA Rules, Art. 11. 1).

지정된 기한 내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은 관련 당사자의 국적과 같은 국가에서 선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제5항은 제3항이나 제4항과는 달리 중재법원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지명하기위해 당사자가 지명한 공동중재인이나 또다른 사람이 준수할 원칙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제5항을 중재법원에 의한 선정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ICC 국내위원회의 역할

1922년 ICC중재규칙이 제정된 이후 ICC국내위원회는 중재인 선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 후 개정된 규칙도 중재법원이 선정하는 중재인을 국내위원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므로 현재의 규칙 제9조 제3항에 이를 반영하였다.

ICC국내위원회는 90개국 이상의 국가에 실업계와 법조계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 선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내위원회는 여러 나라에 각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ICC중재법원에 회부된 사건에 중재인으로 활동할 자격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고, 잠재력 있는 집단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감에 따라 사무국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이 국내위원회는 중재법원이 진정한 국제기구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어느 중재지판도 이와 비교될 국제적 조직망을 갖고 있지 않다.

모든 국내위원회는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중재법원에 중재인을 추천할 목적에 맞게 조직이 정비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국내위원회가 정규직원을 두고 잠재적인 중재인을 발굴하고 정례적인 모임을 갖는데 반하여 그렇지 않는 국가도 있다. 예컨대 프랑스, 영국 및 미국의 국내위원회는 자신들의 업무를 도울 독립적인 현지 변호사(local practitioners)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ttees or commission)를 두고 있다. 또 많은 국내위원회는 중재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추천할 수 있는 비공시적인 중재인명부를 갖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CEPANI¹⁹⁾와 같은 지역중재기관과 약정을 맺고 자신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유럽과 북미에 있는 대부분의 국내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재법원으로부터 중재인 추천제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재인을 제안할 공식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국내위원회가 뛰어난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재인단(Arbitration

19) CEPANI(Centre pour l' Etude et la Pratique de l'Arbitrage National et International)는 벨기에 중재기관이다. CEPANI중재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네덜란드어 또는 다른 선택된 언어로 진행되며, CEPANI중재의 40%가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이다. H. V. Houtte, op. cit., 2002, p.392.

Panel)의 감독하에 중재법원에 중재인을 추천할 중재상담자(Arbitration Consultant)를 고용하였다. 여러 해 동안 중재상담자로 활동했던 David Sarre가 자신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²⁰⁾

“누구를 중재인으로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중재상담자의 기능이다. 그렇다고 중재상담자가 통제받지 않고 감독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 ICC중재인으로 활동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지명된다면 적어도 2명의 중재인단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에 중재인단은 중재상담자가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위원회이다. 중재상담자가 추천 시 기준으로 삼는 정보는 분쟁의 성격, 분쟁금액, 중재지, 준거법, 중재언어 및 3인중재의 경우 공동중재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중재인단회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항은 적용되는 기준과 매 지명시 이들 기준에 적용되는 비중에 관한 것이다. 또한 중재인단은 비밀리에 중재인으로 지명된 자의 자격을 논의 한다”.

그렇다고 모든 국내위원회가 완벽하게 기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도 제도상 종종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유능한 중재인을 확인하는 중재법원의 능력은 국내위원회의 도움이 없다면 크게 훼손될 것이다.²¹⁾

그렇지만 실제로 중재인을 선정하는 기관은 국내위원회가 아니라 중재법원이다. 따라서 1998년 중재규칙을 개정할 때 제9조 제3항에 명시적으로 중재법원에 국내위원회의 추천을 거절할 권한을 규정하였다. 즉, 동 항에는 중재법원이 국내위원회에 새로운 제안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다른 국내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한 국내위원회는 그로 인하여 중재법원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며 추가적인 추천의뢰를 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국내위원회의 추천에 대한 거절권을 갖는 중재법원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국내위원회가 없는 국가에서도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²²⁾

그렇게 규정한 의도는 국내위원회가 없는 국가에 있는 잠재적인 중재인도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므로 ICC중재인 선정을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확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최근 중재법원은 ICC국내위원회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9조 제4항에 의존할 필요가 거의 없게 되었다.²³⁾ 실제로 2004년의 경우에 중재법원은 국내위원회가 없는 국가에서 단 한명의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아마 ICC가 계속 국내위원회의 조직망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제9조 제4항의 유용성은 더 줄어들 것이다.

20) D. Sarre, "ICC United Kingdom and Its Role in Arbitration," *International and ICC Arbitration (King's College 1990)*, p.58, pp.59-60.

21) R. Smit, "An Inside View of the ICC Court," *Arb. Int.*, Vol.10 No.1, 1994, pp.61-63.

22) Arnaldez and Jakandé, "Les Amendements Apportés au Règlement d'Arbitrage de la Chambre de Commerce Internationale(C.C.I.)," *Rev. arb.*, 1988, p.67, p.72.

23) 1988년 이후 중·동유럽, 아세아 및 라틴아메리카 등으로부터 30개국 이상의 새로운 국내위원회가 설립되었다.

3. 적절한 국내위원회의 선택

중재법원은 중재인 선정과정에서 국내위원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선정할 때 2가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먼저 적절한 국내위원회를 결정하고 다음은 동위원회가 추천한 중재인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통상적으로 이들 2가지 결정을 분리하여 시행해 왔다.

사무국의 제안이 있으면, 중재법원은 첫 번째 위원회에서 검토를 받게 된다.²⁴⁾ 중재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중재법원은 국내위원회의 추천과 위원회의 제안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 중재법원은 적절한 중재인을 추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위원회를 선택하기 때문에 종종 특정인의 추천을 받고자 특정 국내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자주 선택되는 국내위원회의 경우 중재법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위원회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법원은 ICC중재를 널리 보급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국내위원회 가운데서 중재인을 선정하고자 노력해 왔다. 2004년의 경우에 중재법원은 39개의 국내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재인을 선정했지만, 대부분이 ICC중재의 중재지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스위스, 영국, 미국과 같이 국제중재의 전문가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몇몇 국가의 국내위원회에 중재인 추천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위원회의 선정에서 중재법원이 통상 고려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 그 첫째가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은 당사자와 다른 또는 중립적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중재법원이 상황에 따라서는 일방당사자와 같은 국적을 갖는 중재인을 추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반대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재법원은 사무국이 미리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추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비공식적인 의사표시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그러한 추천을 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중재법원은 동 규칙 제9조 제5항에서 금지한 국내위원회를 배제하고 중재인 추천 작업을 개시한다. 개인이나 국가의 경우에 비록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할 때 그의 국적을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동 기업의 주영업지의 국적을 동 기업의 국적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ICC중재에서 중재를 이용하는 많은 기업이 큰 그룹사에 속해있고, 동 그룹은 다른 관할권에 속해있는 회사나 개인에 의하여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실례로, 프랑스현지법인의 경우, 미국 모기업이 100%지배권을 갖는 단순한 방계회사일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법인은 제9조 제5항이 규정으로 보아 프랑스국적으로 간주되는지 미국국적으로 간주되는지 문제가 될 수

24) 이러한 절차는 ICC중재에서 국내위원회가 중재판정부 구성을 부당하게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aker School of Foreign Comparative Law, Columbia University, "ICC Rules Commentary," *World Arb. Rep.*, Vol.3(Supplement), 1992, pp.3662-3667.

있다.

이에 관하여 LCIA규칙은 당사자의 국적은 대주주나 지배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국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⁵⁾ 이 조항의 이론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해도 ICC는 그러한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다. 누가 대주주인지 또는 누가 지배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비록 외관상 명료하다고 해도 그들의 국적에 관해 중재법원이 이를 조직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배적인 주주나 이해관계는 중재인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알 필요가 있다.²⁶⁾

당사자의 국적과는 별개로 3인 중재에서 공동중재인의 국적을 고려하여야 한다.²⁷⁾ 따라서 중재법원은 공동중재인이 확인되기까지는 국내위원회를 선택하지 않는다. 비록 중재규칙은 중재법원으로 하여금 의장중재인을 공동중재인과 같은 국적을 갖고 있는 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재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당사자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재판정부 구성을 피하길 원한다. 중재법원이 의장중재인을 공동중재인과 동일국가의 사람으로 선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유일한 경우는 양 당사자가 동일국적의 공동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이다.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중재법원은 가능한 한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예컨대 과거에는 분쟁의 당사자가 이란, 이라크 또는 리비아인 경우에 미국인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 선정을 금지해왔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유럽인과 아프리카인 사이의 중재에서도 중재인을 다른 지역에서 찾고자 했었다.

그러나 특정 사건에서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중재지, 중재언어, 분쟁의 성격, 공동중재인의 정체성과 그들의 전문성 등이다. 중재법원은 ICC중재규칙 제9조 제5항을 해석함에 있어 분쟁의 한 당사자가 속한 국가와 정치적·경제적 지역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에 속한 의장중재인이나 단독중재인을 배제할 만큼 그렇게 광의로 해석하지 않는다.²⁸⁾

중재법원은 가끔 개발도상국의 변호사들로부터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지나치게 편중되게 선진국에서 선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것은 중재법원의 선진국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재지나 준거법 등과 관련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중재법원이 중재지 선정시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는 중재지와 함께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와 준거법이다. 이 가운데 중재지는 중재비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재법원은 최대

25) LCIA Rules, Art. 6. 2; "The nationality of parties shall be understood to include tha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r interests".

26) ICC Rules of Arbitration, Art. 7(2). 참조.

27) ICC Rules of Arbitration, Art. 9(1).

28) Société chérifienne des pétroles c/Mnnesmann Industria Iberia,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January 18, 1991), *Rev. arb.* 1996, p.503.

한 비용효과를 달성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중재지에 거주하는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재법원은 통상 중재지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중재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예컨대 중재지가 파리인 경우에 서유럽에서, 그리고 중재지가 홍콩인 경우 아시아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고자 할 것이다.²⁹⁾

마찬가지로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와 준거법도 중재인 선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분쟁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가 영어로 작성되고 준거법도 영미법계의 법률이라면 중재법원은 통상 영미법국가의 국내위원회로부터 중재인 추천을 받고자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계약이 대륙법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면 중재법원은 관련법계의 국가로부터 중재인을 추천을 받고자 할 것이다.

4. 중재인 선정과정

일단 중재법원이 적절한 국내위원회를 선택하면 사무국은 동 위원회와 접촉하여 추천을 요청한다. 그렇지만 사무국은 중재법원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내위원회의 추천과 중재법원의 선정과정에서 당사자의 개입을 막고자함이며, 선정이 끝난 뒤에야 당사자들은 통보를 받게 된다.

사무국이 국내위원회와 접촉할 때 당사자의 실체, 그들의 변호사 및 공동중재인을 포함하여 분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중재언어와 준거법이 이미 결정되었다면 중재지, 분쟁금액 및 다른 요건과 함께 설명내용에 포함된다. 나아가 국내위원회는 당사자와 독립적 관계에 있는 중재인을 확인할 필요성을 통보받게 된다.

ICC중재규칙 제9조 제3항은 국내위원회로 하여금 중재법원이 확정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법원이 실제로 그러한 기간을 확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위원회는 보통 사무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요청받는다. 중재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중재법원은 1회 이상의 추천을 하도록 사무국에 촉구해 왔다. 국내위원회에 따라서는 추천하는 후보에 관하여 사무국과 비공식적인 상의를 할 수 있다. 국내위원회는 추천서 사무국에 예상되는 중재인의 이력서와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를 제공한다.

추천서류는 우선 사무국에 제공되어 중재법원의 위원회에 넘겨진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추천은 수락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법원은 사무국에 새로운 추천을 요청하거나 다른 국내위원회를 지정하도록 요청한다. 추천의 적절성을 검토함에 있어 중재법원은 동 규칙 제9조 제1항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29) W. L. Craig et al,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3rd ed., Oceana Pub. Inc. 1998, pp.192-193.

5. 중재법원의 중재인 선정

ICC중재규칙 제9조 제6항은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중재법원이 그를 대신하여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중재법원은 위의 당사자가 속하는 국내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법원이 그 추천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의 국내위원회가 중재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추천하지 못하거나 또는 위의 당사자가 속하는 국가에 국내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원은 그 재량에 따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만약 국내위원회가 있다면 사무국은 선정할 인사가 속한 국가의 국내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여 중재법원이 선정하는 「당사자 태만선정」(default appointment)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4년의 경우 한 해 동안 확인 또는 선정된 공동중재인의 수는 총522명으로 그 가운데 30명이 중재법원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중재법원은 가능한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다수 당사자에 의하여 중재인이 지명되고 이들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위하여 제10조가 도입되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신청인이 합동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합동지명이 없으면 모든 관련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가 각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들 중 1인을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제6항은 중재법원이 국내위원회로부터 중재인을 추천받을 때 제3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됨을 규정하지만, 제6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속한 국내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내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그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국적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사무국은 선정된 인사가 속한 국내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³⁰⁾

V. 결 론

ICC 중재에서 중재인의 선정 및 확인은 중재법원의 핵심적인 역할 중의 하나이다. 특

30) 각 국내위원회는 그러한 선정사실을 아는데 이해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위원회가 중재법원에 중재인을 추천할 때 중재인의 담당건수와 경험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히 중재인의 확인은 ICC 중재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중재법원이 분쟁의 판단자인 중재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적합성 등을 검증하여 확인함으로써 중재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중재법원이 중재절차의 관리자 혹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제상사분쟁에서 당사자들이 중재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는 중재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 비공개성 외에도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재의 성패는 그 중재인의 역량에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ICC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의 선정을 보다 엄중히 하기 위해 “확인”(confirmation)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다. 나아가 ICC 중재에서 중재인을 확인함에 있어 중재법원은 예정중재인의 국적, 거주지, 당사자나 다른 중재인이 소속된 국가와의 기타 관계 및 중재수행 가능여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올 2월 1일에 발효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의 기피(제13조)나 해임(제14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및 중재인 해임의 결정 등에 따르는 절차로 인해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중재원의 국제중재에서도 ICC 중재와 같이 중재인의 확인 절차를 두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중재원이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여러 중재인들을 확보하는 일이다.

대한상사중재원도 이러한 ICC 중재의 주요 특징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수용한다면 보다 국제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ICC 중재규칙의 일부조항을 우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Arnaldez and Jakandé, "Les Amendements Apportés au Règlement d'Arbitrage de la Chambre de Commerce Internationale(C.C.I.)," *Rev. arb.* 1988.
- Bon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12. No.1, 1991.
- Craig, W. L. et al.,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3rd ed., Oceana Pub. Inc., 1998.
- Derains. Y. & Schwartz, E.A., *A Guide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 International, 2005.
- Eisemann, F., "Déontologie de l'Arbitre Commercial International," *Rev. arb.* 1969.
- _____, "Le nouveau règlement d'arbitrage de la Chamber de Commerce Internationale," *Droit et Pratique du Commerce International*, Vol.1. No.3, 1975.
- Houtte, H. V.,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2.
- Lalive, "On the Neutrality of the Arbitrator and the Place of Arbitration," *Swiss Essay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1984.
- Paker School of Foreign Comparative Law, Columbia University, "ICC Rules Commentary," *World Arb. Rep.*, Vol.3(Supplement), 1992.
- Sarre, D., "ICC United Kingdom and Its Role in Arbitration," *International and ICC Arbitration*, 1990.
- Smit, H., "The Law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m. Rev. Int. Arb.* 1991.
- Smit, R., "An Inside View of the ICC Court," *Arb. Int.*, Vol.10. No.1, 1994.
- Société chérifienne des pétroles c/Mnnesmann Industria Iberia,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January 18, 1991), *Rev. arb.* 1996.
- LCIA Arbitration Rules(1998)
- ICC Rules of Arbitration(1998)

ABSTRACT

A Study on the Appointment and Confirmation of the Arbitrators in ICC Arbitration

Won-Suk Oh

Yong-Il Kim

The role of ICC Court of Arbitration in ICC Arbitration is critical in maintaining the good reputation and worldwide recognition.

While most arbitration institutions are the products of regional or national private associations, which play a relatively limited role in appointing or confirming the arbitrators, the Court of Arbitration is not only international in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through the each National Committee, but also intervenes in the confirmation of the prospective arbitrators proposed by the parties. Thus the ICC Arbitration is undoubtedly the most highly-supervised form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availab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ppointment and confirmation system of ICC Arbitration, to fi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and to check how to apply the features in the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Rules). Although the KCAB Rules have inherent limitations in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s comparing with the ICC Court. They do not have any confirmation system of the arbitrator proposed by the parties.

Although no arbitral institutions is in a position to guarantee completely the ultimate quality and efficacy of the process, the ICC, more than any other institution, has historically endeavored to do so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efforts of its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nd National Committees. Composed of legal professionals of more than 75 nationalities, the Court, with the support of its permanent Secretariat in Paris, brings to bear on the decisions that it is responsible to make the collective and disparat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a multinational body.

Therefore, if the KCAB wants to attract many international disputes, it should try to benchmark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especially the Article 9, to secure the prominent arbitrators throughout the world, even though a lot of limitations exist. The positive role of the ICC Court of Arbitration gives us very important signal.

Key Words : ICC Court of Arbitration, Appointment and Confirmation of the Arbitrators,